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 1 절 최초규정

제 1.1 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은 상품·서비스·투자 또는 인에 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양 당사국 간의 국제법적 의무로부터 이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검토하여 공동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서로 즉시 협의한다.

제 1.3 조 의무의 범위

1. 국제관습법에 따라, 그리고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대한 당사국의 준수를 판정하기 위한 목적상,
 -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그 당사국의 정부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 또는
 -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정부에 의하여 위임된 그 당사국의 정부 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는당사국 정부권한의 행사 또는 행사의 실패로 간주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포함된 내국민 대우 의무는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에 적용되며 당사국의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부여하는 그 대우는, 그러한 내국민 대우 의무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속한 당사국의 모든 상품, 서비스, 인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지역 또는 지방정부가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2 절 일반적 정의

제 1.4 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중앙 정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코먼웰스 정부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관련 장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행정기관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호주의 경우, 관세 및 국경보호부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6장(무역구제)에 합치하는 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추가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라. 부록2-가-1에 설정된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율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하여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21.3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지방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 그리고
- 나. 호주의 경우, 지역정부 산하의 모든 정부

조치는 모든 법·규정·절차·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 나. 호주의 경우, 2007년 「호주시민법」에 정의된 호주의 시민인 자연인, 또는 1994년 「이민규정」에 따라 정의된 영주권자인 자연인

원산지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지역정부”는 적용가능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 나. 호주의 경우, 호주의 주, 호주 수도 특별구역, 또는 노던준주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¹.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

나. 호주의 경우, 호주의 영역으로서,

- 1) 노퍽 섬, 크리스마스 섬, 코코스 (킬링) 제도, 애쉬모어와 카르티어 제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및 코랄시 제도의 영역 외에 모든 외부 영역을 제외한다. 그리고
- 2) 국제법에 따라 호주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호주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을 포함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마라케쉬에서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